
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공시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 조제 4 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
관한 감독규정 제 9 조에 따라 2026. 06. 18 부로 제정된 당사의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디더블유에스 자산운용
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내용 -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

■ 제정 및 시행일 : 2026년 06월 18일

■ 제정 배경 및 목적 :

기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분리·체계화하여,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.

■ 주요 내용 :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, 동 법 시행령 제10조,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와 임직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.

금번 제정은 기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 있던 관련 내용을 분리·정비한 것으로,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체계 및 형식 측면에서 정비된 사항입니다.